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2023년 1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2023년 1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출자자별 위탁운용 금 액	○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 : 총 3,200억원 내외 (단위: 억원) <table><tr><th colspan="2">정책출자자</th><th rowspan="2">합 계</th></tr><tr><th>정부재정(재정모펀드)</th><th>한국산업은행</th></tr><tr><td>300</td><td>2,900</td><td>3,200</td></tr></table> * 출자자별 위탁운용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출자자별 승인 절차 진행함	정책출자자		합 계	정부재정(재정모펀드)	한국산업은행	300	2,900	3,200													
정책출자자		합 계																				
정부재정(재정모펀드)	한국산업은행																					
300	2,900	3,200																				
분 야 별 출자계획	○ 출자계획 (기업투자 블라인드펀드) (단위: 개, 억원) <table><tr><th colspan="2" rowspan="2">지원 분야</th><th colspan="3">정책출자자</th><th rowspan="2">펀드별 목표결성금액</th><th rowspan="2">선정 운용사수</th><th rowspan="2">조성 목표</th><th rowspan="2">주관 기관</th></tr><tr><th>재정</th><th>산은</th><th>출자비율</th></tr><tr><td>성장지원 일반</td><td>대형</td><td>300</td><td>2,900</td><td>32.0%</td><td>5,000</td><td>2</td><td>10,000</td><td>산은</td></tr></table> ○ 성장지원펀드와 혁신산업펀드 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소정의 심사결과 및 위탁운용금액 조정 등에 따라 정책출자자 출자금액, 비율 및 선정 운용사 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분야		정책출자자			펀드별 목표결성금액	선정 운용사수	조성 목표	주관 기관	재정	산은	출자비율	성장지원 일반	대형	300	2,900	32.0%	5,000	2	10,000	산은
지원 분야				정책출자자							펀드별 목표결성금액	선정 운용사수	조성 목표	주관 기관								
		재정	산은	출자비율																		
성장지원 일반	대형	300	2,900	32.0%	5,000	2	10,000	산은														
운 용 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신한자산운용: www.shinhanfund.com																					
접수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0:00 ~ 15:00																					
접수방법	○ 지원분야별 주관기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킨 내 제출(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 *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시킨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분야별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가. 기본항목

항 목	세부내용
출자대상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에 한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투자기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펀드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심사결과 발 표	○ 2023년 6월 중* * 일정은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정책출자자별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 출자확정
펀 드 결성시한	○ 2023년 12월말 * 연내 결성 조건(연장불가), Multi Closing은 '24.3월말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
운 용 사 신청자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 제안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사전협의 요망) ○ 제안 운용사에서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요망 ○ 제안 운용사가 유한회사이고 동사의 출자자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기존 펀드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기존 펀드 운용사와 제안 운용사의 최대 출자자가 동일하거나 기존 펀드 운용사에 참여한 개인 출자자중 2/3 이상이 제안 운용사의 출자자로 참여하면, 기존펀드 운용 실적을 본건 제안 운용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 - 단,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 법인 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공동운용(Co-GP) 제안은 허용하지 않음

나.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주 목 적 투자비율	☐ 성장지원 일반 (대형) ☐ ①, ②를 모두 충족 ①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②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 5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투자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건 투자시, 외부 전문기관의 재무실사 또는 재무자문 의무																								
정책출자 비 율	☐ 정책출자비율 [32%] 이내로 제안																								
운 용 사 의무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2%] 이상* *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소속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으로 인정																								
투자한도	☐ 기업별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20%] 이하로 제한																								
존속기간	☐ 펀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가능)																								
투자기간	☐ 펀드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운용보수	☐ 관리보수 : ① 또는 ② 중 택일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아래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이내에서 협의 가능 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 이후 투자잔액 기준 <table><tr><th>구 분</th><th>≤1,000억원</th><th>≤2,000억원</th><th>≤3,000억원</th><th>3,000억원 <</th></tr><tr><td>투자잔액</td><td>연1.6% 이내</td><td>연1.1% 이내</td><td rowspan="2">연0.6% 이내</td><td rowspan="2">연0.5%이내</td></tr><tr><td>(약정총액-투자잔액)</td><td>연1.4% 이내</td><td>연0.9% 이내</td></tr></table> * 성립일~2년 : 투자잔액 및 (약정총액-투자잔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② 2년간 약정총액, 이후 투자잔액 기준 <table><tr><th>구 분</th><th>≤1,000억원</th><th>≤2,000억원</th><th>≤3,000억원</th><th>3,000억원 <</th></tr><tr><td>성립일~2년</td><td rowspan="2">연1.5% 이내</td><td rowspan="2">연1.0% 이내</td><td rowspan="2">연0.6% 이내</td><td rowspan="2">연0.5%이내</td></tr><tr><td>2년~만기</td></tr></table> * 성립일~2년 : 약정총액 기준, 2년~만기 : 투자잔액 기준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이내 ○ 기준수익률 : 내부수익률(IRR) 8% 이상 (단, 타 출자자 대비 낮지 아니하여야 함) ○ 상기 보수 체계를 기본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성과보수를 연계 구성하여 제안 가능(사전 협의 요망)하며, 펀드별 보수체계는 선정시 개별 협의를 거쳐 확정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	투자잔액	연1.6% 이내	연1.1%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약정총액-투자잔액)	연1.4% 이내	연0.9% 이내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	성립일~2년	연1.5% 이내	연1.0%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2년~만기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																					
투자잔액	연1.6% 이내	연1.1%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약정총액-투자잔액)	연1.4% 이내	연0.9% 이내																							
구 분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3,000억원 <																					
성립일~2년	연1.5% 이내	연1.0% 이내	연0.6% 이내	연0.5%이내																					
2년~만기																									

항 목	세부내용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 민간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인센티브 (①, ② 중 택일, 미선택 가능) * 민간출자자 : 운용사, 운용사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해외출자자, 정책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출자자. 연기금·공제회와 같은 민간자금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는 민간출자자에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준(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참고)																
	① 초과수익 이전 - 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 중 10% 이내** 금액을 민간출자자 앞 지급 * 펀드수익률이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초과 후, 정부재정, 한국산업은행 앞 배분되는 금액 ** 지급 시점마다 민간출자자 비중을 아래의 산식에 적용하여 지급률 산정 초과수익 지급률 = 10% × (민간출자자 비중/50%) (단, 최대 지급률은 10%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콜업선 - 투자기간 종료시점에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재정출자금액의 50%를 한도로 민간출자자 지분율**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 행사가격 = 재정출자액 × [1 + (결성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0%)]^{경과기간} ** 전체 민간출자자 지분 중 개별 민간출자자 지분																
운 용 사 추 가 인센티브	○ 인센티브 조건 충족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 이내에서 달성률에 따라 운용사 앞 지급 (①, ② 중 택일, 미선택 가능) ① 중소기업 신주 투자실적(중소기업 신규발행주식 투자금액 합계/약정총액) <table><tr><td>중소기업 신주투자 비율</td><td>60% 이상</td><td>70% 이상</td><td>80% 이상</td></tr><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table> * 기업규모는 건별 투자시점 기준으로 판단 ② 민간 모험자본 및 해외자본 모집실적(민간 모험자본(해외자본 포함) 약정액/약정총액) <table><tr><td>민간모험자본 모집비율</td><td>30% 이상</td><td>40% 이상</td><td>50% 이상</td></tr><tr><td>인센티브 지급비율</td><td>2% 이상</td><td>3% 이상</td><td>5%</td></tr></table> * 민간 모험자본 : 인센티브 취지상 공공기관, 공제회, 연기금, 운용사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재정모펀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자로 정책출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외 * 해외자본 : 운용사의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자금의 실질이 국내 자본으로 정책출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제외, 민간모험자본 약정액 산정시 해외출자자 약정액은 20%p 가중치 적용 * 민간 모험자본 모집 비율은 펀드 최종 결성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종 결성 이후 지분 양도 등에 따른 출자자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중소기업 신주투자 비율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인센티브 지급비율	2% 이상	3% 이상	5%	민간모험자본 모집비율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지급비율	2% 이상	3% 이상	5%
중소기업 신주투자 비율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인센티브 지급비율	2% 이상	3% 이상	5%														
민간모험자본 모집비율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지급비율	2% 이상	3% 이상	5%														

항 목	세부내용
핵심 운용인력	○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핵심운용인력 중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 자격요건 - 핵심운용인력은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별 제안서 엑셀 서식 '작성요령' 참조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규약)에 기재
수탁회사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 펀드 최종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 계 감 사 인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해 출자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 펀드 투자실적에 대해 IGS(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를 활용한 투자실적 제출 의무 - 펀드 조성목적에 따른 투자실적 및 집계를 위한 사항으로 정관(규약)상 비밀 유지 조항의 예외사항으로 정관(규약)에 반영하며 피투자 기업의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제공정보: 투자기업개요(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코드, 기업규모, 설립일자, 지역구분), 식별정보(구분, 식별번호, 뉴딜 품목코드, 기표일, 기표금액)
공정가치 평 가	○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한 '지분법(연결)' 패키지를 한국산업은행 앞 제출 (정관(규약) 반영사항)
기 타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이후 최종 결정 예정

항 목	세부내용
	○ 최다출자자 우대 -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병행펀드를 포함 전체 출자자 중 최다출자자 1곳)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 우대적용(예: 관리보수 인하) 가능 - 주목적 투자분야, 비율 등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는 조정 불가 ○ 운용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펀드(Parallel 펀드) 구조로 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병행펀드와 본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정책출자자 출자비율 등 산정 -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 -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의 결성일보다 늦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 세부 운용조건, 결성일 등은 공고조건 및 펀드조성 취지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부재정 펀드(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으며, 세부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 ○ 주관기관의 내규, 정관(규약)을 우선 적용 - 주관기관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편입가능 자산 유형)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정관(규약)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책임투자(ESG, 스튜어드십코드 등) 관련 운용사 내규, 구축 및 운영 현황, 도입 계획 등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심사시 반영 -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적정한 지배구조(G) 요소 등을 종합 고려 ○ 해외투자 제한 - 해외투자는 약정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하며, 해외투자는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 해외투자 예시 가. 국내기업이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외국기업 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외국에 공동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 다. 회사(펀드)가 국내기업(SI)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 라.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 유치 또는 사업의 외국진출을 위해 해외로 법인을 전환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단, 국내에 사업장과 인력 유지, 내국인이 경영권을 보유) 마. 전체 고용인력 대비 한국 내국인 고용률이 50% 이상인 외국기업 바. 국내기업과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 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지원분야별 주관기관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2. 선정 우대 항목

- 주관기관 위탁 운용 펀드 청산 수익률이 우수한 경우
-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2022년 출자사업 공고문상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달성한 경우
 - * 주관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적용
- 「ESG 투자 이행점검」(산업은행)에 따른 우수 운용사로 선정된 경우
 - * 산은 주관 분야에 한하여 1회 적용

3.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써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책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 취소

- 펀드의 목표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공고문 또는 정책출자자가 제시하는 출자조건 등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협의 등 후속 업무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정책출자자가 판단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시 원칙적으로 정책출자자간 협의에 의해 차순위 후보자와 우선협의를

4.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약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출자사업에 제안시 감점(가점)되거나, 3년의 범위 내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3년 3월 31일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 정부 정책 및 재정 모펀드에 대한 당행 내부 승인 결과 등에 따라 본 사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단, 변경사항 발생시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5.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구술심사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23. 5. 17	제안서 접수	10:00~15:00
2023. 6월 중	최종 선정	개별 통지
2023. 7월 중	출자확약서 발급	출자자별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2023년 2차 출자사업(매칭출자)은 하반기 중 별도 공고 예정

6. 접수처 및 문의방법

□ 접수 및 문의방법

○ 주관기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킨 내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12부)를 제출

- 분량 :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출자사업 설명회

- 2023. 5. 4(목) 오전 10시 한국산업은행 본점 스타트업 IR센터 (주차불가)

* 일정 변경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설명회 이후 FAQ 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

* 문의사항 집계, FAQ 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

구 분	대 형
주 관 기 관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전 화 번 호	02-787-0688, 0680, 0678, 0681
E - M a i l	kdbindirect@kdb.co.kr

2023년 4월 28일

한 국 산 업 은 행
신 한 자 산 운 용 (주)